

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4 년 5 월 24 일
3. 정정사유 :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
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(표준편차 기준 7.57% → 97.5 VaR 기준 14.21%, 4 등급 유지)
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4.03.01 시행) 반영
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</u> 못합니다.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<요약정보>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입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%이상을 국내채권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%이하를 국내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. 이에 따라,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위험 및 금리시장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입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%이상을 국내채권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%이하를 국내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. 이에 따라,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위험 및 금리시장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<요약정보> 투자자유의사항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요약정보> 주요투자위험	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	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

	<p>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</p>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p>가. 일반위험 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가. 일반위험 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</p>
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7.57%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 <p><변동성 기준 위험등급기준 분류표>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(VaR)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은 14.21%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 <p><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* 사용)></p>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<p>나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<신설></p>	<p>나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<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>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 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	-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4 년 5 월 24 일
3. 정정사유 :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등 갱신
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	<p>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입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%이상을 국내채권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%이하를 국내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. 이에 따라,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위험 및 금리시장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입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%이상을 국내채권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40%이하를 국내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. 이에 따라,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위험 및 금리시장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<요약정보> 투자자유 의사항	<p>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요약정보> 주요투자위험	<p>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</p>	<p>- 원본손실위험 :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.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</p>